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3. 17 선고 2020가단539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(탈퇴) A 주식회사

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유병연,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0. 12. 16

판결 선고 2021. 3. 17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대하여 2019 . 5. 23.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5. 23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E는 2018. 7. 31. F 주식회사(이하 'F'라 한다)로부터 1,300만 원을 이자율 14.9%, 지연이자율 17.9%로 정하여 대출받았고, D은 E의 F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.

원고는 2019. 6. 11. F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, F은 2019. 6. 13.경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원고 승계참가인은 2020. 7. 20. 원 고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,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20. 7. 29.경 D에게 채 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나. D과 그의 모친인 피고는 2016. 1. 1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수하여 2016. 3. 16. 각각 1/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2019. 5. 23. D의 각 1/2지분에 대하여 같은 일자 피고에 대한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를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각 소 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다. D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 및 시가 1억 1,000만 원상당의 대구 달성군 G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,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 하여 다른 금융기관 등에 원금 합계 163,348,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6, 8, 13내지 15, 17내지 1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및 H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의 각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증여는 D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는 D의 채무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경제력이 없는 D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소 유명의를 D과 피고의 공동명의로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D은 매수자금을 전혀 보태지 아니하였는데, 이후 D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고 부부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d의 지분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을 제1,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D이 자금을 보탠 것이 없고 매수자금 전액을 피고와 그의 배우자인 l가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이후 D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 바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D의 지분은 D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고, 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증여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문현정

별지